

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3. 21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 함.(안 제12조의3)

3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정비

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.

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2조의3(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)</u> <u>①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대한 임기제한으로 보육시설간의 균형유지 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제한은 다음과 같다.</u> 1. 시설장(원장) : 40세 ~ 55세이하 2. 기타종사자 : 20세 ~ 40세이하 <u>②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12조의3(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)</u> <u>삭 제</u></p>